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51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이양수·김성원·안병길

박덕흠 • 홍문표 • 윤창현

정경희 · 최춘식 · 지성호

노용호 · 정희용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제3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선원법」의 개정)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1항 전단"을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을 "인·허가등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제13호·제15호"를 "제9조제1항제13호·제15호"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으로 한다.

제8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를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11조(「연안관리법」의 개정)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항로표지법」의 개정)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승인·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항만공사법」의 개정)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 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항만법」의 개정)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해사안전법」의 개정)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증심사에 대한 이

- 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60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16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을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가"를 "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를 "관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해운법」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를 "14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 등의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결

- 정·확정 등 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결정·확정 등 또는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연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항만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결정・면허・협의・동의・	
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u>한다)</u> 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u>인가ㆍ허가 등</u>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u>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제</u>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9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	
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	
해제·협의·신고 등 <u>(이하"인</u>	(০) ক্ট "인
<u>가·허가등"이라 한다)</u> 을 받은	<u> 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u>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	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
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인가・허가등의 고시・공고가	<u>당 인가·허가등</u>
있는 것으로 본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	3
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	
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u><후단 삭제></u>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 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행정절차법」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 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u>(이의신청)</u> ①・② (생	략)	제10조 <u>(이의신청 특례)</u>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u>에 따른다.</u>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혅 행 정 아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 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 우 -----의 허가 · 인가 · 결정 · 면허 · | 협의 · 동의 · 승인 · 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 해양수산부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삭 제>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 <삭 제>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 협의 · 동의 · 승인 · 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 · 허가등이 행하여진 것 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 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 17. (생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 1. ~ 17. (현행과 같음)
- ② -----
- _____
- _____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 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 청할 수 있다.

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을 포함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

----- <후단 삭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u>⑤</u>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 <u><삭 제></u> 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 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 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 <u>(이의신청)</u> ① 인증검사에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	<u>한 이의신청 특례)</u> 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그 사</u>	<u>해양수</u>
<u>유</u> 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u>정한다.</u>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u> 따른다.</u>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 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 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 인 · 허가 · 인가 · 신고 · 지정 또는 결정 · 면허 · 협의 · 동의 ·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u>다)</u>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가 등의 의제) ②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u> </u>	<u>실시계획</u> -
	한다)에 관하
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본다.

1. ~ 31. (생 략) <신 설>

제9조의2(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

	의 상과 미리 엽의한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1. ~ 31.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2(인·허가등의 의제를 위
	한 일괄협의회) ①
	<u>제9조제2항</u>
	② <u>인·허가등의</u>
제	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

항제13호·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 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준공확인) ①・② (생 략) 저

-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 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u>제9조</u>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 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 로 본다.
- ④・⑤ (생략)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 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 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 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 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

<u>제13호·제15호</u>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공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
<u>1항</u>
④·⑤ (현행과 같음)
6

항 각 호의 허가 등"은 <u>"제9조</u> 제2항 각 호의 인·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u>"제9</u>	<u>조</u>
제1항	각 호	트의	인 .	허가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ले व	행		개 정 안
제15조(지정・결정의	의제)	(생	제15조(지정·결정의 의제) <u>①</u>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지정・결정・확
			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u> 준용한다.</u>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생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u>①</u>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삭 제></u>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을 제출하여야 한다.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아 혅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어선 · 어구 감척 대상 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 결정 등 이 법에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정하는 바에 따라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삭 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삭 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	
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	
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	
·협의·동의·승인·신고 또	
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	<u>(</u> 이하 이 조에서 "인
<u>· 허가등"이라 한다)</u> 이 행하여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서는 해당 인·허가등
본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4
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u>	<u>10일 이내</u>
<u>내</u>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허가ㆍ승인ㆍ신고 등 의제의 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	<u><삭 제></u>
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	
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23	
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	허가 등의 의제) ①
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	
• 승인 • 결정 • 지정 • 협의 • 신	
고 또는 해제 등(이하"인가·	
허가등"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으	한다)에 관하여 해양

로 본다.

- 1. ~ 24. (생략)
-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 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 로 본다.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수산부장관이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가·허가등---.

- 1. ~ 24. (현행과 같음)
- ② -----

----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2조제 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 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u>⑤</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
제) ①・② (생 략)	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3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u>	<u><</u> 후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	<u>삭제></u>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u>본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개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또는 벼겨슺이윽 시천한 때 해	다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청) ① (생략)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심사에 관하여 이의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 ③ (생 제60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략)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55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지명령 또는 제56조제3항에 따 른 시정・보완 명령, 항행정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 조에 따른다. 에 따른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 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정 개 아 혅 했 제3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3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면허 · 승 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 ----(이하 "인ㆍ허 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것으로 본다. 해당 인ㆍ허가등----.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2)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 <후단 삭 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 제> 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 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	
인·협의 및 신고 등 <u>(이하"허</u>	(০) ক্ট "ক্ট্
<u>가등"이라 한다)</u> 을 받은 것으로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u>당 허가등</u>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은 것으로 본다.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	
면허·인가·신고·협의 <u>(이하</u>	(০) চৌ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진</u>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
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이 행하여진
·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	2
의 <u>인가</u> 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u>인가 또는 변경인가</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u>해</u>	<u></u> 관
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	계
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u>대통령령으로</u>	<u>14일 이내</u>
<u>정하는 기간 내</u> 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 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 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	<u><</u> 삭 제>
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	
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	
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	
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	
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	③ 제1항
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	
수산부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	4
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	
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 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 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다.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객운 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14일 이내에</u>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